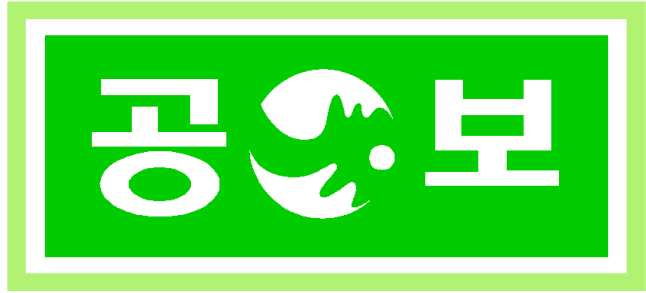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공 보	기 관 의 장

## 제 1090 호 2017. 10. 26. (목)

### 훈 령

-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241호[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증보증 규정 일부규정개정] ..... 2

#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198호[하천 점용허가 고시] 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0호[『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』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] ..... 5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1호[도로계획시설(도로 : 소로1-10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] ..... 10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4호[하천 점용허기 고시] ..... 21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5호[도로명주소 고시] ..... 2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6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..... 24

### 공 고
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-1162호[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..... 26

안 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☞ 북구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→행정정보→알림마당→북구공보</li> </ul>
--------	---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41-7125 행정7125)

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개정  
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41호

**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 
규정 일부개정규정**

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재무업무담당은 5천만원”을 “재무주무관 및 그 대리자·분임  
자는 1억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1천만원”을 “2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◆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◆

1. 개정이유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증액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, 「지방회계법(2016.5.29.제정)」 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-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 증액 및 대상자 확대
  - 재무관, 회계담당과장, 재무업무담당 : 5천만원 → 재무관, 회계담당과장, 재무주무관 및 그 대리자·분임자 1억원
  - 그 외 회계관계공무원 : 1천만원 → 2천만원
- 상위법령 제정으로 인한 법조항 변경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 → 「지방회계법」 제49조로 변경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- 198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  
양정천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
가. 성명 :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
나. 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
3. 점용 목적 및 개요  
공작물의 신축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
가. 위치 : 양정동 511번지 외 2필지  
나. 면적 : 872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
영구 : 2017. 10. 20. ~ 2021. 12. 31.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- 200호

### 『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』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

『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』에 대하여 「하천법」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3일

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공사의 명칭 : 태풍 차바 수해복구공사(신명천 3구역)
2.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
  - 목 적 : 2016년 태풍 ‘차바’시 피해를 입은 신명천(상류부)에 대하여 하천시설물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향후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도모
  - 개 요 : 축제 및 호안정비 L=1.1km, 교량 재가설 4개소
3.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
  - 울산광역시 복구 대안동(상대안마을 ~ 상류부) 일원(신명천 내)
4.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  - 명 칭 :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  - 주 소 :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(연암동, 복구청)
5.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  - 착수일 : 2017. 7.            - 준공예정년월일 : 2018. 1.

6. 수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

- 해당없음

7. 실시설계도서 : 시행청 비치 (북구청 건설과)

8.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16년	비 고
사 업 비	1,716	1,716	태풍 '차바' 재해복구비

9. 공사에정공정표 : 시행청 비치 (울산북구청 건설과)

10.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
- 하천명 : 신명천(지방하천)
- 위치 및 사업규모 : 상기와 같음
- '신명천 하천기본계획'에 따라 하천시설물 유지관리

11.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: 해당사항 없음

12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북구청 건설과(☎052-241-78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	지목	공부면적 (㎡)	평면면적 (㎡)	토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구	동				주소	성명	권리구분	관리자	주소	
1	북	대안 산209-4	구	520	4		국(농림수산부)				
2	북	대안 1115	도	724	23		국(국토교통부)				
3	북	대안 산209-3	임	2,920	2	울산광역시 중구 내항길 18-1(반구동)	황성구 외 3인				
4	북	대안 1059-1	권	55,679	6,750		국(국토교통부)				
5	북	대안 820	권	255	92		김진구				
6	북	대안 산209-5	권	1,887	818		국(농림수산부)				
7	북	대안 산209-13	임	99,023	16	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동리 166	오피스 외 6인				
8	북	대안 825	임	959	190		김진구				
9	북	대안 산252	임	41,883	1,291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00, 105동 1703호	손영배				
10	북	대안 1114	도	79	79		국(국토교통부)				
11	북	대안 826-2	권	1,372	751	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859 13호	이남지 외 1인				
12	북	대안 1113	도	89	76		국(국토교통부)				
13	북	대안 산253	임	5,256	255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00, 105동 1703호	손영배				
14	북	대안 844	임	231	227	울산광역시 울주군 강동면 대인리 486	이종호				
15	북	대안 834-14	임	46	21		울산광역시 북구				
16	북	대안 834-8	임	28	1	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5-11 201호	권산조 외 6인				
17	북	대안 1112	도	73	66		국(국토교통부)				
18	북	대안 842	담	642	4	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09(대안동)	임광일				
19	북	대안 845-1	임	66	66	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00, 105동 1703호	손영배				

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	지목	공유면적 (㎡)	권면적 (㎡)	토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		소유권이외의 권리			비고
	구	동				주소	성명	권리구분	권리자	주소	
20	북	대안 1065	도	813	387		국(국토교통부)				
21	북	대안 845-4	읍	190	190		김영준				
22	북	대안 845-5	읍	85	85		김영준				
23	북	대안 845	읍	270	25		김영준				
24	북	대안 845-6	읍	294	273	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
25	북	대안 845-2	읍	25	25	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
26	북	대안 847-1	진	400	400		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서릉 158				
27	북	대안 847	진	199	197		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466-1				
28	북	대안 산254	임	27,260	2,030	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
29	북	대안 847-3	진	446	445		경상북도 경주시 배동 466-1				
30	북	대안 847-2	진	3	3						
31	북	대안 845-7	읍	346	19	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
32	북	대안 500-2	진	283	275	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
33	북	대안 500-1	진	204	1		울산 남구 신정동 864-9				
34	북	대안 산115	임	36,198	242		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27번길 15(신정동)				
35	북	대안 498-2	진	3	3	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739				
36	북	대안 498-1	진	56	5	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739				
37	북	대안 497-2	진	155	155	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497				
38	북	대안 497-1	진	130	51	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497				



##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	지목	공부면적 (㎡)	편입면적 (㎡)	토지 소유자 주소 및 성명		소유권인외의 권리			비고
	구	동				주소	성명	권리구분	관리자	주소	
39	북	대안 496	임	221	221		정만권				
40	북	대안 495-1	전	149	28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739	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				
41	북	대안 495-2	전	99	99	울산시 강동면 대안리 739	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				
42	북	대안 494	임	803	429		권원조				
43	북	대안 491-1	임	311	4		국(기획재정부)				
44	북	대안 1086	도	33	31		국(국토교통부)				
45	북	대안 1087	도	255	1		국(국토교통부)				
합계				280,963	16,356						43페이지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- 201호

## 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로1-106호선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도시계획시설(소로1-106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892-23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1-106호선)사업
  - 나. 명 칭 : 달천편백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
3. 사업규모 : 도로개설 L=1,707m, B=10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  - 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
5. 사업기간
  - 가. 당 초 : 2016. 3. ~ 2018. 3.
  - 나. 변 경 : 2016. 3. ~ 2018. 8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지번·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: 불임 명세서와 같음
7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불임 명세서와 같음
8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(☎052-241-78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연번	위 소	시 번	시 역	구 분 (단)		시 명	소 유 지		비 고	비 고
				영구	임대		부 소	주 소		
1	북구 문인동 895-90	관서외	관	46,935	154	164	죽간(상가)			
2	북구 문인동 895-94	관	관	5,556	417	429	죽간(상가)			
3	북구 문인동 895-95	관	관	4,151	31	11	관리사무사 북구 문인동 357/부지(상가/상가)			주최회사 관리사무사
4	북구 문인동 936	관	관	3,939	23	26	죽간(상가)			
5	북구 문인동 895-1	관	관	16,771	3,664	3,554	죽간(상가)			
6	북구 문인동 895-23	관	관	1,958	157	164	죽간(상가)			
7	북구 문인동 895-50	관	관	1,595	906	606	죽간(상가)			
8	북구 문인동 895-103	관	관	405	79	79	죽간(상가) 관리사무사 북구 문인동 357/부지(상가/상가) 경상남도 민행시 민행시 북구 문인동 358/부지(상가/상가) 부산광역시 북구 문인동 357/부지(상가/상가) 부산광역시 북구 문인동 357/부지(상가/상가)			
9	북구 문인동 895-202	관	관	413	82	81	죽간(상가)			
10	북구 문인동 895-57	관	관	565	146	146	인수			
11	북구 문인동 895-98	관	관	677	729	231	위도			
12	북구 문인동 895-95	관	관	491	132	123	관리사무사			
13	북구 문인동 895-94	관	관	32	12	9	관리사무사			
14	북구 문인동 895-22	관	관	83	73	16	관사			
15	북구 문인동 928	관	관	3,539	415	389	관(상가)			
16	북구 문인동 482	관	관	426	74	26	관사			
17	북구 문인동 376-3	관	관	135	92	92	0세대			
18	북구 문인동 377-	관	관	86	85	86	0세대			
19	북구 문인동 376-	관	관	383	65	61	관사			
20	북구 문인동 377-1	관	관	95	56	36	4세대			
21	북구 문인동 377	관	관	113	76	41	안포			
22	북구 문인동 376-2	관	관	44	39	33	관사			
23	북구 문인동 378	관	관	565	32	31	안포			
24	북구 문인동 379	관	관	971	84	81	관사			
25	북구 문인동 386-	관	관	2048	28	27	관리사무사 북구 문인동 357/부지(상가/상가) 경상남도 민행시 민행시 북구 문인동 358/부지(상가/상가)			
26	북구 문인동 386-2	관	관	18	15	14	관리사무사 북구 문인동 357/부지(상가/상가)			
27	북구 문인동 388	관	관	15	2	1	안포			

단번 번호	위시	지번	면적	면적(㎡)		소유자	비고	소유권 비율	소유권 비율
				면적	부담				
24	북구 문신동 892-11	경	1,700	1,700	4(전면지)				
25	북구 문신동 892-2	경	649	29	28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
26	북구 문신동 892-13	경	272	272	4(전면지)				
31	북구 문신동 892-55	경	459	155	179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2	북구 문신동 892-54	경	38	5	9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4	북구 문신동 892-14	경	8	21	10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5	북구 문신동 892-14	경	37	37	33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6	북구 문신동 892-14	경	1,066	1	1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6	북구 문신동 892-14	경	1,551	50	49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7	북구 문신동 892-52	경	21	20	20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8	북구 문신동 892-51	경	148	58	95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38	북구 문신동 892-51	경	488	79	79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0	북구 문신동 892-53	경	461	107	107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1	북구 문신동 892-52	경	421	44	22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2	북구 문신동 892-12	경	238	233	233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3	북구 문신동 892-10	경	308	268	204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4	북구 문신동 892-10	경	68	58	68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5	북구 문신동 892-13	경	20,033	802	23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6	북구 문신동 711-4	경	379	373	375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7	북구 문신동 711-1	경	106	105	106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8	북구 문신동 711-2	경	2,610	105	125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8	북구 문신동 892-7	경	17	112	112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49	북구 문신동 711-3	경	377	174	96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51	북구 문신동 711-3	경	194	112	387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51	북구 문신동 892-55	경	86	56	86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			용인광역시 북구 문신동 488-20-2

연번	위치	제명	성	족	면적(㎡)		면적(㎡)	수		비고	비고	비고
					전	후		전	후			
53	북구 달전동 892-64		전	32	20	32	남산(전)					
54	북구 달전동 953		7	513	1	1	죽영(남산,부)					
55	북구 달전동 892-3	892-139	전	218	175	175	갑사(전)	남산(전)				
56	북구 달전동 717	719-1	전	797	29	18	갑사(전)	죽영(남산,부)				
57	북구 달전동 718	718-1	전	1,315	918	9	갑사(전)	남산(전)				
58	북구 달전동 892-47		전	214	232	232	남산(전)					
59	북구 달전동 897-130	892-174	전	446	435	417	갑사(전)	남산(전)				
60	북구 달전동 892-123	892-173	전	431	375	351	남산(전)					
61	북구 달전동 897-176		전	364	313	308	남산(전)					
62	북구 달전동 892-48	892-172	전	421	360	46	죽영(남산,부)					
63	북구 달전동 723	720-2	전	2,662	17	16	남산(전)					
64	북구 달전동 771	771-1	전	456	354	254	남산(전)					
65	북구 달전동 938		보	317	10	-	죽영(남산,부)					
66	북구 달전동 721		전	513	452	-	남산(전)					
67	북구 달전동 892-45		전	1,392	312	177	남산(전)					
68	북구 달전동 897-177		전	719	718	137	남산(전)					
69	북구 달전동 892-45		전	305	344	164	남산(전)					
70	북구 달전동 892-6	892-171	전	76	38	29	남산(전)					
71	북구 달전동 892-44		전	522	66	26	남산(전)					
72	북구 달전동 777	777-2	전	1,657	754	160	남산(전)					
73	북구 달전동 937		전	1,755	916	916	남산(전)					
74	북구 달전동 726	726-1	전	1,510	333	170	남산(전)					
75	북구 달전동 735	735-1	전	364	42	44	남산(전)					
76	북구 달전동 717	717-1	전	315	7	11	남산(전)					
77	북구 달전동 734	734-1	전	498	96	1	남산(전)					

연월일	부지	시범	면적(㎡)		면적(㎡)	평수	소 수 지		비고	소유권 이의의 존재여부	
			지상	지하			소유권	부속		소유권	부속
84	북구 월관동 735	735.0	㎡	86	37	14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5	북구 월관동 736-1	736.4	㎡	594	113	70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6	북구 월관동 738	738.2	㎡	1872	383	457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1	북구 월관동 747	747.0	㎡	1188	771	134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4	북구 월관동 746	746.0	㎡	1314	484	390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2	북구 월관동 745	745.0	㎡	370	273	273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1	북구 월관동 802-132		㎡	158	70	70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6	북구 월관동 802-111		㎡	21.4	2.46	1.845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6	북구 월관동 81760-2		㎡	669	294	776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7	북구 월관동 8180-1		㎡	51.8	351	351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8	북구 월관동 808-4	808.7	㎡	2167	46	46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85	북구 월관동 768-3	768.6	㎡	2734	56	35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6	북구 월관동 768-2	768.5	㎡	1633	113	148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1	북구 월관동 8180-3	8180.0	㎡	486	486	187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7	북구 월관동 81784	81784.0	㎡	2575	441	446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3	북구 월관동 8185-1	8185.0	㎡	1523	513	419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4	북구 월관동 8182-1	8182.0	㎡	7432	633	898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5	북구 월관동 8183		㎡	992	12	12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6	북구 월관동 880		㎡	76	7	7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7	북구 월관동 8179-1	8179.0	㎡	4362	879	828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8	북구 월관동 8160-1		㎡	12894	113	119	국립묘지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95	북구 월관동 8177	8177.1	㎡	1884	655	873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100	북구 월관동 8177		㎡	48	48	48	아파트	용산광역시 용구 수환동 30.6을 12.0로(이하)등 동적면적(이하)고			
합 계					2587	21977					

승인 소재지	지번 대장	물건의 종류	구조 및 구역	수량		소유자		이해 관계인		비고
				성명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	
1	도안동 892-189	주택	조각소 리본	㎡	71.24	홍*관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권리	권거주자
		양장	복합	㎡	?		영신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타락	콘크리트	㎡	76.25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대문	철계	식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난간	스타인레스	식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대추나무	주	2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은행나무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사철나무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2	남천동 892-188	주택	콘크리트	㎡	81	황*수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3	도안동 892-170	주택(화우스)	콘크리트화우스	㎡	56.53	한*수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간디나무	주	3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민초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미소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쌍구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대추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버찌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황나무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4	남천동 892-186	창고	콘크리트(오픈)	㎡	15.02	한*조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화장실	블루 스테인드	㎡	4.5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집기	수거용	식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5	남천동 492-3	주택	블록화우스	㎡	16.50	정*기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대문	대문	식	1.00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마당	콘크리트	㎡	26.00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목	대추	주	·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수도	수도	식	1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		화단	화단	식	1		홍진영(의사) 부구 호계리 21, 302호(상계동, 홍포두르(의사))	영신 부동산 892-103		실거주자

3	달서동	579-5	케네디우즈	비밀이우즈	49.5	m	3세대	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1동 (2세대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
			장터리	장터리(비밀이우즈)	14	m		
			오동	오동(51~53m)	1	시		
			수목	모그	1	종		
7	남초동	577-4	수목	쌍나무	1	...	3세대	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1동 (2세대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
			화면	취노	1	시		
			수목	포도나무	1	종		
			수목	엽계나무	?	종		
			수목	장미	1	종		
			수목	엽계나무	1	종		
8	남초동	578-3	택장	클룩	86	m	P+8층	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1동 (2세대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
			장고	분홍색사범	2.5	m		
			대문	대문	1	시		
			수목	수목	1	시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			수목	수목	1	종		
9	남초동	579-2	택장	포톤	22	m	중·대	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1동 (2세대) 용인광역시 북구 용인석곡2동 (농림용)
			낙지	꽃종	12	m		
			미강	큰크라운	44	m		
			대문	생체시문	1	시		
			나이프	1-무선기념	1	식		
			수목	라멘탑	2	종		



			매스	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		
			남순	5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			서그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			해탈나무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		
			관동	?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			능나무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		
			무회피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			쪽박아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			병발류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			장구	?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2호 (영진동)			
10	남포동	533-1	부끄나무	27			계원(아수구) 장동희		부산광역시 남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	
			별도	10.0					부산광역시 남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	
			활물	3.8					부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	
11	남포동	892-184	별도	20.7			김*희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 17-2 (영진동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석류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영진서도원 12-2 (영진동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12	남포동	892-177	괴어피조	11/			부*원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13	남포동	403-1	물물순계나무	79.3			부*원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상나무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14	남포동	401-1	북두솔자리앗	46.23			부*원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대문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15	남포동	407-1	갈나무	1			부*원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구제룡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무강래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물나무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사철나무	20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장구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소나무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사철나무	26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매스	1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			측화	3			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 50 (10-1방파, 니트시)	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	원산광역시 북구 유원리5호 (유원동)





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7 - 204호

## 하천 점용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### 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1. 하천의 명칭  
염포천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
가. 성명 : (주)지오뱅크  
나. 주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248번지 3층
3. 점용 목적 및 개요  
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 (지반조사)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
가. 위치 : 양정동 772-6번지  
나. 면적 : 12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
일시: 2017. 10. 24. ~ 2017. 11. 7.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 - 205호

### 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#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1로 63-8(진장동) 외 5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0. 26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중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블루단지 8B 3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동1로 63-8 (진장동)	2017-10-26	진장유동로에서 분기된 도로로 진장유동로와 연계성을 반영	2016-07-28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맨션지구 13B 6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44-10(진장동)	2017-10-26	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진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3	울산광역시 북구 삼안동 957-1외 1필지(959-1)	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96-6(삼안동)	2017-10-26	동대 마을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4	울산광역시 북구 강동신해지구 87B 3-1L	울산광역시 북구 화암14길 20-1(신해동)	2017-10-26	화암마을 명칭을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	2014-05-07	
5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06-2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07(천곡동)	2017-10-26	옛 지명과 연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5-28	
6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07-2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13-6(천곡동)	2017-10-26	옛 지명과 연관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5-28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-206호

#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77-2(진장동) 외 2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3,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[www.bukg.go.kr](http://www.bukg.go.kr)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7. 10. 26.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

#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77-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113-6	2017-10-26	건축물 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96-6	울산광역시 북구 상안동 957-2, 959-1	2017-10-26	건축물 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113-6	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07-2	2017-10-26	건축물 멸실	

**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 2017-1162호**

「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」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26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- 행정안전부의 “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”에 따라 개별 일몰제 적용, 최소납부세제 신설 등을 반영하고
-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조례의 감면 일몰기한이 2017. 12. 31. 도래됨에 따라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감면위임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
- 나. 울산항만공사 감면기한 종료에 따른 재산세 감면규정 삭제
- 다. 최소납부세제 신설(안 제12조)
  - 재산세가 100% 면제되어 재산세 감면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% 감면을 적용(면제세액의 15%는 부담)
- 라. 조례 유효기간 3년 일몰제 부칙조문 삭제(조문별 일몰제로 변경)

**3. 개정조례안 : 붙임**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서 기재내용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전자메일

다. 제출기관 :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세무과장)

- 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/ 우편번호 44248
- 전화 : (052)241-7521, 팩스 : (052)241-7509,
- 전자메일(E-mail) : pg2010@korea.kr

**5. 기타 사항**

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※ 북구청 홈페이지 (<http://www.bukgu.ulsan.kr>) 참조

##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

#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장 감 면

**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)**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“조례로 정하는 율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**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** ① 「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」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면제한다.  
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**제4조(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)**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 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.
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“3년”을 “7년”으로 하고,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**제5조(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)**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(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폐업(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)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1. 달천동 농공단지

**제6조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**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금액”은 다음과 같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500원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
2.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

### 제3장 보 칙

**제7조(직접 사용의 의미)**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.

**제8조(감면 제외대상)**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「지방세법」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9조(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)**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

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「지방세법」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법」 제32조에 따른다.

**제10조(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적용)**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.

**제11조(중복감면의 배제)**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
**제12조(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)**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(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(「지방세법」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3조에 따른 감면

**제13조(감면신청 등)**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「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